#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941 발의연월일: 2025. 2. 6.

발 의 자:김은혜·서일준·주진우

한기호 • 박정하 • 권성동

신동욱 · 김위상 · 박수영

이달희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험금을 노린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같이, 현행법은 그 취지와 무관한 불의의 사고로 인한 사망이 보험사고가 되는 보험계약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15세미만자의 경우에도 재난·감염병 등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학교 및 청소년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활동에서 발생한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현행법의 취지가 몰각되지 않도록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이 계약의 주체가 되는 단체보험의 경우로 한

정하여 불의의 사고에 대한 대비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732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2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단서 중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제735조의3에 따른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32조(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 1.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제735조의3에 따른 단체보 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 2. 15세미만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학교·청소년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활동 중에 발생한 사건을 원인으로한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을 포함한다)가 제735조의3에 따라 체결하는 단체

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는 경우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결하는 보험계 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第732條(15歳未滿者等에 對한 契 제732조(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 約의 禁止) 15歲未滿者, 心神喪 약의 금지) 15세미만자, 심신상 失者 또는 心神薄弱者의 死亡 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 을 保險事故로 한 保險契約은 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u>무효로 한다.</u> -----다음 각 호 無效로 한다. 다만, 심신박약자 | 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제7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35조의3에 따른 단체보험의 피 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신 설> 1.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 결하거나 제735조의3에 따른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 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2. 15세미만자가 「재난 및 안 <신 설> 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 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 병 또는 학교·청소년단체 등 에서 실시하는 단체활동 중에 발생한 사건을 원인으로 한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교

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도・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을 포함한다)가 제735조의3에 따 라 체결하는 단체보험의 피보 험자가 되는 경우